

소화기 시장의 유통 질서 건전화를 위한 안내문

마그네슘에 적응성 있는 D급(금속화재용) 소화기의 시험 기준이 포함된 “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”이 발령(“24. 7. 25.”)됨에 따라,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, 진열 및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 금지

☑ 처벌규정

◆ [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57조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3.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
4.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받은 자
5. 형식승인 받지 아니한 것,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, 제품검사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·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

제58조(벌칙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7. 형식승인 받은 자,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

□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의 금지

-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‘소화기’로 오인 또는 혼동 유발하는 행위
- ‘D급’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
 - ☞ 예) D급 소화기(금속+리튬화재), 금속소화기(D급): 일반금속용·리튬전용, D급 소화 리튬이온 배터리 등

○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·광고하는 행위

☞ 예)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- 화재진압 성능인증, 리튬&금속화재 진압,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, 리튬배터리 화재소화 전용, 전기차 전용 소화기 등

- ▶ ① 국내 D급(금속화재용) 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로,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, 리튬이온전지(리튬배터리)와는 무관합니다.
- ▶ ②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(Class) 및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.
- ▶ ③ 특히,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 전기자동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 및 내장된 배터리로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여 국내외 유통 중인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곤란합니다.

☑ 처벌규정

◆ [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

제9조(과징금) ①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를 위반하여 표시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 수익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**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**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**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**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**

제17조(벌칙)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**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**

◆ 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

제45조(과태료)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,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(☎ 044-205-7511)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인증부(☎ 031-289-28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소 방 청